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3.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3.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 제출일자: 2025. 2. 26.
- 회부일자: 2025. 2. 26.
- 검토기간: 2025. 2. 26. ~ 2025. 3. 5.

### 2.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사업비 (1년기준)	운영 인력	비고 (개관일)
월배노인종합 복지관	진천동 493-7번지 일원(진천동)	지하1층, 지상3층 (5,029.86㎡)	983백만원 정도 (시비 497, 구비 486)	17명 (예정)	2025. 9. (예정)

####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사업 전반
  -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위탁기간: 5년(2025. 8.~2030. 8.)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4.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5. 검토의견

-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현재 인구비율은 60세 이상 25.4%, 70세 이상 10.4%에서 2024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28.3%, 70세 이상 12.0%로 전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및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그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달서구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60세 이상	70세 이상	비고
2022. 12월	536,989	136,231 25.4%	56,028 10.4%	
2023. 12월	527,781	141,325 26.8%	59,026 11.2%	
2024. 12월	522,021	147,566 28.3%	62,470 12.0%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본 동의안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완공(2025. 9월 개관 예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임.
-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같은 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위탁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